

[요약본]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일 : 2026. 7. 24.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은 2026. 7. 24.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요약본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위 연구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연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에는 각주와 참고문헌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본 요약본이 아니라 연구보고서의 해당 페이지를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jpri.scourt.go.kr>)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1장 서론

청소년기에 형성된 법적 사고와 가치관은 성인이 된 후의 법적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법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교육 관련 과목이 다른 과목에 포함되어 있거나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법교육의 비중이 크지 않고 기회도 많지 않다. 이에 따라 학교 외에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법제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한국법교육센터 등을 포함한 여러 법교육 주체들이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법원도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법을 해석·적용하여 권리와 의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법원의 법교육을 통해 법뿐만 아니라, 법원의 역할과 기능 등을 이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현대 민주사회에서 법원의 역할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기관이 아닌, 법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법의식 함양과 법치주의 내면화에 기여하는 것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법교육은 청소년이 법과 이와 관련된 제도 및 법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법적 사고능력을 갖추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 법교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배운 법원과 소송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법원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법원을 통한 직접적인 법교육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극복하도록 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청

소년이 법원의 독립성과 소송절차의 공정성과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역할 등을 이해하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의 법교육은 법교육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임을 알리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법원에 대해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 법원과 법원 외 법교육 주체들의 법교육을 참고하여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제2장 청소년 법교육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법교육과 관련한 기초적 이론

I. 법교육의 개념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우리나라 법교육지원법에서는 법교육을 ‘청소년 및 일반 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 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 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 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제2조 제1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교육의 개념은 법학교육(Legal Education)과의 비교를 통해 더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다. 법학교육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교육은 비법조인인 청소년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과 규칙의 배경이 되는 가치관이나

사법제도의 기능이나 의의를 경험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참여 위주의 교육, 사고력 중심의 교육을 의미한다.

II. 법교육의 목적

법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 올바르게 건전한 법의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법치 사회의 실현이다. 기본적으로 법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법 지식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사회 속에서 법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한편, 법교육 대상과 관련하여 일반 시민과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의 목적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법교육의 핵심 목적은 법의 기본 가치와 법의 공정성 등을 이해시켜, 청소년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청소년 법교육의 성격은 형성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법교육의 방식은 모의재판, 법원견학, 역할극 등과 같은 체험 중심 법교육에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은 청소년 법교육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권리구제라는 실질적 기능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 시민에 대한 법교육 방식은 실제 사례 분석 및 서식 활용 등을 통한 권리구제 및 분쟁 해결에 그 중심이 있다.

III. 법교육지원법에 관한 개괄적 고찰

2008년 3월 28일에 법률 제8992호로 제정되고, 2008년 6월 29일 시행된 법교육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법교육지원법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교육지원법 제1조와 제2조 제1호에서는 각각 법교육지원법의 목적과 법교육을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법교육의 유형으로서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을 구분하였다.

둘째, 법교육지원법 제3조는 법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법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국가의 시책마련 의무를,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 구축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교육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셋째, 법교육지원법 제4조에 의하면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두는데(제1항), 이 위원회는 법교육의 정책 방향 설정,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교육 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제2항).

넷째, 법교육지원법 제5조 제1항은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을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섯째, 법교육지원법 제6조 이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교육 연구개발(제6조), 학교 법교육 지원(제7조), 교원연수 제공(제8조), 사회 법교육 지원

(제9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1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교육지원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교육 추진 및 법교육 인프라 구축과 함께, 특히 법교육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입법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생활법과 관련된 경시대회나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같이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법교육 행사가 주최되고, 학생 및 시민을 상대로 하는 법교육 교재가 발간되었으며, 법조인 및 법률전문가가 직접 나서는 법교육 출장강연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법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자연히 법교육 교재 연구도 활성화되었으며, 교육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교육도 확대되었다.

IV. 법교육 방식

법교육 방식은 기존의 지식 전달 방식에서부터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식까지 있다. 주요 법교육 방식에는 강의식 교육, 사례연구법, 모의재판, 판례 활용 법교육, 현장 학습과 외부자원인사 활용을 포함하는 지역사회기반 학습, 역할놀이, 배심원 토론, 학생자치법정, 계기 수업, 교육연구 등이 있다. 강의식 교육은 기초 개념 형성에, 사례연구법이나 판례 활용은 사고력 훈련에, 모의재판과 배심원 토론 및 학생자치법정 등과 같은 체험형 교육 방식은 교육내용의 체득화(體得化)에 각각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 법교육은 이들 방식을 학습 단계별로 결합한 혼합형 모델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 중 청소년 법교육에서는 체험형 방식이 법의 개념과 내용을 현실적 상황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는데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학교 법교육과 학교 외 법교육

I. 학교 법교육의 연혁(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법교육은 근대 교육이 시작된 대한제국 말기인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법교육은 ‘법제’ 혹은 ‘법제 경제’라는 과목으로 바뀌었고, 1932년에는 군국주의 강화로 인해 법교육이 전면 폐지되었다.

교수요목기(1946년~1954년)는 광복 후 법교육은 제국주의 교육방식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사회과’라는 과목이 등장하며 국가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기 위한 법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사회과’ 과목은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법 영역과 관련성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명칭은 ‘정치문제’로 주요 법교육 내용은 헌법과 사법제도에 관한 것이다.

정부 수립 후 제1차 교육과정기(1954년~1963년)는 민주주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고, 반공 교육이 강화되었다. 법 영역과 관련이 있는 제1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은 ‘정치와 사회’였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정부 구조론이 내용의 핵심이었고 대단원 ‘법원’에서는 심급제, 민·형사 재판, 사법권의 독립과 견제 및 균형을 다루고 있었다. 뒤의 입헌정치 대단원에서는 비중이 작지만, 헌법도 다루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1973년)의 방향은 반공 교육과 신인간상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에는 법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정치·경제’ 교과목에서 헌법 내용이 다뤄졌는데, 정치영역이 확대되었고, 법 영역의 범위는 축소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기(1973년~1981년)의 배경에는 ‘국민교육헌장’과 유신헌법의 제정이 있었다. 법교육은 ‘정치·경제’ 과목을 통해 더 강화되었는데, 새로운 법 교육 내용으로는 ‘법의 기초이론’, ‘개인 간의 생활에

관한 법’, ‘범죄와 형벌’, ‘경제와 복지에 관한 법’, ‘행정에 관한 법’ 등 법기초 이론 및 생활 관련 법 영역이 포함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1987년)에는 경제교육의 확대에 인하여 법교육의 비중은 축소되었고, 법교육의 주요 내용도 헌법 영역으로 제한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기(1987년~1992년)에는 선택과목인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한 고교 인문계 과정의 학생들만 법의 일반 이론 등을 학습할 수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공통필수과목인 ‘정치·경제’의 헌법교육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헌법상 기본권과 통치 기구에서의 법원 정도만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법교육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기(1992년~1997년)에서는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되면서 법교육은 ‘공통사회(상)’과 ‘정치’ 과목 내에서 다루어졌다. ‘공통사회(상)’의 ‘Ⅴ. 개인과 국가’ 단원에서 헌법 영역 이외의 법주제를 학습하게 되었고, ‘정치’ 과목의 ‘Ⅱ. 시민 생활과 법’ 단원에서도 법 영역을 다루고 있어 학습 내용이 다양화되었지만, 오히려 교과서에서의 법 영역의 비중이 줄어드는 원인 등으로 오히려 제5차 교육과정기보다 법교육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기(1997년~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심화선택과목인 ‘법과 사회’ 과목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법치 사회의 실현뿐만 아니라 실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법과 사회’ 과목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인문계열 학생들만 심화선택과목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법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 법교육 내용이 더 분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과 사회’가 폐지되고 정치

영역과 통합된 ‘법과 정치’가 만들어졌다. ‘법과 정치’는 교사가 가르치기 어려운 과목, 학생에게는 외울 것이 많은 과목이 되어 선택과목으로서의 선호도가 낮았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법 영역이 명료화되었고, 고등학교 ‘법과 정치’가 ‘정치와 법’으로 교과목명이 변경되었고, 학교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법교육의 내용이 대폭 축소 또는 삭제되었다. 현재의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2’ 외에 진로 선택과목인 ‘법과 사회’ 과목이 신설되어, 다양한 법 영역에서의 내용을 비교적 고르게 반영하고 학생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영역의 주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II. 학교 법교육의 문제점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공간인 학교를 통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법교육이 특정 과목에만 집중되어 있고, 특히, 고등학교 ‘통합사회2’에서의 법교육은 헌법과 인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과 사회’가 진로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학생들의 법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이로 인해 권력 분립, 사법부 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의 보장, 민법상 계약자유 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심층적인 학교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한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법교육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법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 등이 높지 않으며 교사의 법교육 수업에 대한 부담도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 법교육은 이론적·주입식 교육에 집중되고, 법과 관련한 심화된 토론이나 체험형 수업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학교를 통한 학생 법교육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실시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III. 학교 외 법교육 주체의 역할

학교 외 법교육 주체란, 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법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학교 외 법교육 주체는 전문적인 법 지식과 법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법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법교육의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 외 법교육 주체의 법교육 방식은 강의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더 폭넓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법교육 주체가 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전문적 법 영역에 관하여 강의를 하거나 관련 법교육 교재 등을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법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할 경우,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보완되어 학생들의 법적 소양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학교 외 법교육 주체들의 학생 법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전제되는 경우, 학생들이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법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제3장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제1절 논의에 앞서

I.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목표와 의의 및 강점

법원은 전통적으로 분쟁 해결과 법질서 유지라는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시민과의 소통 및 신뢰 형성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법교육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법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를 내면화시키는 통로가 되며, 장기적으로 사법 신뢰를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을 넘어 법원 판결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법 신뢰와 긴밀히 연계된다.

첫째, 법원의 사법적 절차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교육과 체험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완화 또는 제거된다.

둘째, 모의재판이나 재판 방청 등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공정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접하면서,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다.

셋째, 법원의 법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형성된 법원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인식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어 사법부 전반에 대한 장기적 신뢰로 연결된다.

넷째, 청소년 법교육은 청소년이 장차 배심원, 증인, 또는 소송 당사자가 될 때 법원의 사법적 절차에 대해 더 협조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단순히 사법 신뢰의 강화 측면에서만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법교육은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법원견학, 모의재판, 판사와의 직접적인 소통 경험은 법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정보적·심리적 접근성을 동시에 향상한다.

사법 접근성은 사법 신뢰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국민이 사법제도를 이해하고 접근 가능하다고 인식할수록, 법원에 대한 신뢰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 법교육을 통한 사법 접근성 제고는 단기적인 교육 효과를 넘어, 장기적인 사법 신뢰 형성의 기초 조건으로 기능한다.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법원의 단순한 홍보 활동이 아니라, 사법 신뢰는 물론 사법 접근성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법 정책의 핵심 수단이다.

법원의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은 학교 법교육의 현실

적 공백 보완,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증진, 합리적인 법 판단 능력과 법적 사고력의 배양, 예방적 차원의 법 준수 태도 형성 및 법교육에서의 중립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법원 외에도 다양한 법교육 주체가 청소년 법교육 활동을 하고 있지만,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다른 법교육 주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강점을 가진다.

첫째, 법원은 민형사 등 특정 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법 분야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례가 축적된 국가기관으로서,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법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체험 중심의 법교육은 청소년의 법 이해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학습 몰입도와 기억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하는 독립된 사법부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어, 법원이 주체가 되는 법교육은 청소년이 법의 공신력과 정당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며, 이는 법에 대한 신뢰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

셋째,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재판절차를 통해 구현되는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에 강점을 가지며, 이를 통해 청소년은 법의 핵심 가치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넷째, 재판 실무 경험을 갖춘 판사가 직접 법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법 적용의 현실적 맥락과 판단 과정의 복잡성을 전달할 수 있고, 청소년의 질문에 대해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응답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법교육이 법원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이루어질 경우, 교육의 수용성과 효과는 더 제고될 수 있다.

II. 법원 법교육의 근거

법원의 법교육 활동은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며,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다만, 법원의 법교육 활동의 근거를 굳이 말하자면 재판이 아닌 사법행정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법교육 활동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와 이해 증진 및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하는 법원의 사법행정 활동의 유형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관련 없는 사법행정상의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법원의 법교육은 국민에 대한 법원의 자율적인 사법행정권에 근거한 사법부의 사회적 책무로서의 공적 기능 수행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법원은 법원의 공적 기능 수행의 하나로서 스스로 법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법교육 방식을 정할 수 있고, 법원 자체 또는 외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법교육을 할지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제2절 대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I. 서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가지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심에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이 있다. 대법원규칙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제3항과 이 규칙 별표 제1의8 제4호에 의하면 공보관실은 법원전학 및 법원전시관 등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면서 대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법원의 법교육은 법원전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법원전시관은 법과 법원실, 법원역사실, 기획전시실, 어린이 법 체험실, 법정체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II. 법원전시관 학교연계 법교육 프로그램

대법원 법원전시관은 학기 중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학생들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연계 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 어디까지 아니?’라는 교육주제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기 중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총 12회 법교육을 실시하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타임머신을 타고 온 꼬마 판사’라는 교육주제로 법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인의 꿈, 나의 꿈’이라는 교육주제로 진로체험 법교육을 진행하였다.

III. 법원전시관 방학 법교육 프로그램

(2025년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2025년 겨울방학 동안 일반 학생과 법원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4개의 프로그램이 총 62회 진행되었고 여기에 총 477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평균 접수 마감 소요 시간이 100명당 45초 이내였으며, 추가 신청 및 다른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IV.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대법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법교육을 제공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주요 콘텐츠는 ‘사법부 소개’, ‘법원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법교육 교재’, ‘동영상 보러가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외에도 ‘법관이 되려면’, ‘재판의 종류와 절차’, ‘법교육’, ‘알쏭달쏭 OX퀴즈’ 등을 어린이 법교육 차원에서 배너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V. 기타 법교육 프로그램

대법원의 법교육 프로그램에는 법원전시관 견학 프로그램, 사법역사문화관 법교육 프로그램, 법원의 날 프로그램, 아·태 사법정의 허브 사법견학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법원전시관 견학은 단체 관람과 개인 관람으로 구분되며, 단체 관람은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단체가 사전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사법역사문화교육관 내에는 사법역사문화전시실과 어린이 법체험 공간인 ‘어린이 로스쿨 캠프’가 있다.

제3절 사법연수원의 청소년 법교육

사법연수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경기공유학교 연계 법교육, 방학 중 청소년 법교육, 기타 법교육으로 구분된다. 최근 사법연수원은 경기공유학교 지역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2025년 7월 9일부터 2025년 9월 10일까지 총 8회(매주 수요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 법교육은 고양시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방문 방식과 온라인 방식을 혼합하여 진행되었다.

방학 중 청소년 법교육은 하계와 동계방학에 전국 초등학교(4~6학년)를 대상으로, 동계방학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법연수원은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 중학생 자유학기제에 발맞추어 고양시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법조 직업에 대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양시 소재 특수학교 학생들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제4절 각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은 대법원, 사법연수원뿐만 아니라 각 법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각 법원의 법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는 강의형 법교육뿐만 아니라 체험형 법교육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에는 법원의 법강연, 판사와의 대화, 진로·직업체험, 상설 법률문화학교, 모의재판 경연대회 등이 포함된다.

제4장 해외 주요국 법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제1절 미국 법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청소년 법교육은 법원 견학 프로그램과 법교육 자료의 제공이다. 연방대법원 전시관은 대법원의 역사, 대법관들과 대법원의 업무 등에 관한 전시와 전시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법원들과 연방법원행정처도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방법원행정처의 경우에는 법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방사법센터는 법교육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국립 주 법원센터는 교사, 학생 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주 법원의 법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각 주 법원들도 다양한 방식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 주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법원견학, 학교방문 강의, 법원체험 프로그램, 법교육 자료의 제공, 모의재판 대회와 에세이 대회 등을 포함하는 법 관련 기념일 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법원과 사법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그리고 법원의 법교육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절 영국 법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영국 대법원은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법교육을 제공하면서 학생토론의 날 등과 같은 각종 프로그램을 법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 국립사법박물관은 청소년 법교육을 위하여 각종 전시와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치안판사는 치안판사 협회를 통

하여 매년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법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12세에서 14세의 청소년들과 함께 모의재판대회에 참가한다.

제3절 독일 법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독일에서의 법교육은 정치교육의 하나로 발전해 왔는데, 이를 통하여 독일은 법이 단순히 규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5개(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사회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재정법원)의 연방대법원 차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 법원 차원에서는 법원견학 프로그램과 학교방문 법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주 법무부들은 주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을 기획·홍보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독일 판사연합의 산하에 있는 각 주의 판사연합도 학생들을 위한 법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제4절 일본 법원에서의 청소년 법교육

일본 최고재판소의 청소년 법교육 활동은 법원견학 프로그램과 법교육 자료배포 및 어린이 전용 재판원 교육 홈페이지 운영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 하급재판소의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은 판사의 학교방문 강의, 모의재판과 모의조정, 법원견학, 2009년부터 시행된 재판원제도 교육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오사카지방법재판소의 재판원제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법원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거나 학생들을 법원으로 초청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일본의 재판원제도는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인기가 높은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제5장 법원 외 주요 법교육 주체의 청소년 법교육

제1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I. 법무부

법무부는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정책방향 설정, 법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등 학교 법교육을 제외한 청소년 법교육에 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무부가 하는 다양한 방식의 법교육 활동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법교육 통합 플랫폼 이로운법

이로운법(www.lawnorder.go.kr)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통합 플랫폼으로, 국민 특히 청소년과 시민들이 법과 제도, 권리·의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학교와 관련 법교육 기관의 법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로운법이 제공하는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유형은 크게 법교육 출장강연, 학생자치법교육, 온라인 법교육 콘텐츠를 통한 법교육, 법교육 관련 자료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법무부 솔로몬로파크

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으로 2008년 1월 29일에 설치된 대전 솔로몬로파크를 시작으로 2016년 7월 8일에는 부산, 2023년 3월 1일에는 광주에도 설치되었다. 솔로몬로파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 그리고 일반 국민도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법교육 강의, 다양한 법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하며, 이외에도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도 하고 있다.

3. 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법원 상담조사, 검사 결정 전 조사, 심리검사, 청소년 비행진단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이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현재 전국에 총 1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에서 예시한 프로그램 외에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4. 검찰청

법무부 소속 전국의 검찰청들은 주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검찰청의 경우, 검찰역사관과 검찰체험관을 중심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법무부 법교육 최근 동향

법교육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소년 법교육과 관련하여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서벽지 학생을 상대로 한, 맞춤형 법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유튜브 채널인 ‘범죄예방 365’를 개설하여 청소년 법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II.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는 법교육 강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에선 찾아가는 법교육도 포함된다. 법교육 강사들은 법률구조공단의 직원 중 전문강사교육을 받은 자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업무를 통하여 쌓아온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법교육강의, 교안제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고 있다. 법문화교육센터 교육동에는 법문화체험관과 숙소동이 있어 청소년의 방문(체험)학습과 입

소교육도 가능하다.

III. 법제처

법제처는 매년 어린이 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 법제관(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법제관과 청소년 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헌법, 입법 과정 등에 대한 법제 교육은 물론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제처는 어린이 법제관의 교육과 활동 등을 위하여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IV.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는 견학 프로그램,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청소년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헌법과 기본권 및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이 법교육의 중점대상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에는 청소년들이 헌법과 기본권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챗봇을 활용한 현재톡, 유튜브 채널, 블로그, 페이스북, X(구 트위터)를 게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헌법재판연구원 운영규칙을 통하여 법교육의 대상과 기본계획 수립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교육전담팀을 두고 방문교육 형식 및 (집합 및 원격)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하고 사이버 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매년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강의안은 교원연수에 활용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전국의 교사들이 수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 교육청

전국의 각 교육청은 주로 업무협약을 통하여 관할 구역 내의 청소년들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6개 대형 로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025년 10월부터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고등학교 교실을 직접 방문하는 ‘쉽고 재미있는 법률교육’을 진행하였다.

제2절 민간단체

I. 한국법교육센터

민간단체인 한국법교육센터는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법교육 출장강연,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 학생자치법교육,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법교육 출장강연은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의 초·중·고 학교 및 청소년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법교육이고,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은 지역·계층 간 진로체험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소외지역으로 찾아가 법 관련 진로체험 및 법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한국법교육센터의 법교육과 관련한 주요 사업에는 법교육 전문강사의 양성·관리와 법교육 연구·개발이 있다. 법교육 연구·개발사업은 크게 법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 현장 중심 프로그램 및 강의안 개발, 법교육 관련 연구로 구분되는데, 한국법교육센터가 발간한 청소년 법교육 관련 교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학교)생활법률을 포함한 청소년이 알아야 할 법지식과 법상식을 총망라하고 있다.

II.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와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의 청소년 사회참여 근거 등을 바탕으로 2003년 6월에 출범한 비영리 법인이다. 청소년

년의회는 법조인이 되고 싶은 청소년들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는 대표적으로 청소년 로스쿨 프로그램과 청소년 리걸 클리닉이 있다.

III. 대형로펌 공익재단

대형로펌 공익재단의 경우, 사회공헌 또는 공익활동의 방식(pro bono)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법인 김앤장의 사회공헌위원회는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인 ‘리더(리걸마인드로 더 나은 세상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법무법인 화우의 화우공익재단은 교실법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6장 법원 청소년 법교육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목표인 사법 신뢰와 사법 접근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른 (해외) 법교육 주체의 청소년 법교육 활동을 분석하여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는 법교육 조직구성과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법교육 대상 인원과 지역의 확대,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법교육 자료의 제작 및 배포,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구축, 법교육 관련 대법원규칙의 제정 및 기타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다.

제1절 법교육 조직

I. 법교육 조직구성과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현재 법원에서는 청소년 법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법교육이 주요 업무 사항 중의 하나인 사법연수원의 경우에도 기획·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사법행정지원 판사 1명(기획교수)

이 청소년 법교육을 포함하는 다른 법교육 업무(법관연수, 신입 법관 연수, 재판연구원 등)를 전담하고 있고, 이를 보조·지원하는 총무과 직원도 1명에 불과하다.

법원의 법교육 조직체계가 완비되지 않으면,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이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인 운영 방식으로 진행되기 쉬워,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이 사법 신뢰와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 ‘기관 홍보성 행사’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법교육 횟수와 수요도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대법원 공보관실 내에 법교육 담당관을 두고 이를 지원하는 인력을 확충하여 전국 법원의 법교육을 총괄·기획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아울러 사법연수원에는 가칭 ‘법교육지원팀’을 설치하여 법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법교육 수요가 많은 일선 법원에서는 법교육 전담직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등법원 및 규모가 큰 지방법원에도 가칭 ‘법교육지원팀’을 두어 관할 법원 간 협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법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공보관실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다층적 법교육 조직체계 구축 방안을 전제로 하며, 이는 법원 법교육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는 방안이다. 대법원,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등이 각자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중앙(대법원)-권역(사법연수원, 고등법원)-현장(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다층적 법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방안이다.

II. 법교육 전문인력

사법연수원의 경우에는 기획교수 1명과 법교육 경력이 있거나 법교육을 할 수 있는 사법연수원 외의 판사 및 검사 등과 같은 외부인력을 법교육에 활용하고 있

다. 그리고 각급 법원의 법교육은 사법행정지원 판사나 판사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 자체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교육 역량을 향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원은 자체적인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법연수원은 법교육에 적성과 관심이 있는 법관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법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 내에 가칭 ‘법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원로법관이나 퇴직법관을 법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며, 법원 직원을 법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이 업무를 법원공무원 교육원이 담당하는 방안도 있다.

제2절 법원의 법교육 대상 인원과 지역의 확대

I. 법교육 대상 인원의 확대

현재 법원 공간과 법교육 조직 및 법교육 인력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법교육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의 청소년 법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법원의 법교육은 법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법원 법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청소년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법원이 법교육 대상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교육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의 확충, 온라인 법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 법교육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교육 수요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의 법원의 경우, 법교육 횟수를 늘리거나 법교육을 상시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법

원의 날 등과 같은 기념일이나 중학생 자유학기제를 집중적인 법원 법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법교육 대상 인원이 확대되는 경우, 사법 접근성의 실질적 실현의 측면에서 사법접근센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교육을 진행하고, 가정법원이 촉법소년에 대한 법교육을 전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II.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법교육 지역의 확대

법교육 대상 인원의 확대 외에 법교육 지역의 확대도 청소년의 법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전시관과 사법연수원의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절대다수가 수도권 학생이다. 따라서 법원의 법교육 지역의 확대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원 법교육에서의 지역 간 격차의 해소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대법원 법원전시관과 사법연수원이 다른 일선 법원보다 더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 법교육에서의 지역적 격차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청소년 법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법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인근 법원의出張 법교육을 활성화하고, 대법원 가인연수관과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의 법교육 시설을 보강하여 청소년 법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서벽지 학생들의 법원 법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법교육 프로그램 참여신청에서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제3절 법원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법원의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은 법원이 실제 사법 절차와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법의 작동 방식과 법원의 역할 등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절차적 정의에 대한 이해를 넘어 사법 신뢰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의 의의를 고려할 때, 기존 체험형 프로그램 외에 배심원 토론과 결부된 그림자배심원 프로그램, 법원 인턴십 프로그램, 조정체험 프로그램 및 판결 토론, 청소년 참여법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의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전·사후 연계형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제4절 법교육 자료의 제작 및 배포

법원 법교육 자료의 경우에는 다른 법교육 자료의 내용과 최대한 중복을 피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주제와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법원과 사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이를 통한 사법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적이고 표준적인 법교육 자료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원 내 가칭 ‘법교육실무연구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데, 사법연수원이 법교육실무연구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통일적이고 표준적인 법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할 필요성이 있다.

제5절 법원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의 구축

현재 법원은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 법원의 온라인 법교육 통합 플랫폼은 법교육에서 지역 격차 해소, 상시 학습 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법교육의 지속성 확보, 연령·역량·교육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법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교육 실시 및 법교육 자료 등의 효율적으로 관리와 공유의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제6절 가칭 ‘사법부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법원은 청소년 법교육 활동은 개별 법원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한 교육내용의 표준화 부족, 지역 간 격차, 법교육의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체계 미흡, 학교 법교육 과정과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별 법원을 통한 산발적 법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의 방지와 법원 법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칭 ‘사법부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제7절 기타

I. 법교육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의 확대

현재 사법연수원과 일부 법원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법교육 주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이 교육청 외에 다른 법교육 주체와의 협력관계 구축하는 경우, 법원은 청소년 법교육 수요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법원 법교육의 홍보,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법교육 체계의 구축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법원의 법교육에 대한 평가도 받을 수 있다.

II. 법교육 경연대회의 활성화

법원이 교사(사범대 학생 포함)를 대상으로 한 우수 수업 경연대회와 같은 법교육 경연대회를 개최할 경우, 법원은 우수한 수업 사례와 법교육 콘텐츠를 확보하여 향후 법원 법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법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학생의 학습

동기가 강화되며, 학교와 법원의 법교육 내실화와 사법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전국 단위의 경연대회는 법원의 법교육에 대한 홍보와 법원 법교육의 전국적 표준화를 실현할 수 있다.

III. 교사에 대한 사법교육 직무연수의 활성화

교사(특히 사회과 교사)에 대한 법원의 법교육을 통하여 학교 법교육에 법원 법교육을 구조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교사를 매개로 학생들의 법원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사법교육 직무연수의 의의를 고려할 때, 직무연수가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직무연수 수요를 반영하여, 연수 횟수와 연수 기간 및 연수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각급 법원이 교사 직무연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직무연수 내용의 균질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사법연수원이 개발하고 관련 연수자료를 전국 법원에 배포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교육 직무연수 담당자를 사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제7장 결론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은 단순한 법지식의 전달을 넘어, 청소년이 민주적 법치주의를 내면화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교육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 내 법교육은 과목 편제와 입시 중심 구조, 교사의 전문성 및 수업 여건의 한계로 인해 이론 중심·주입식 교육에 머무르는 경향이 크다. 이에 따라 학교 법교육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학교 외 법교육 주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법교육 주체 중에서도 법원은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학교 법교육의 보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법에 대한 신뢰와 사법 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사법 신뢰와 사법 접근성은 단기간에 가시화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법교육은 중장기적인 사법정책적 목표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 영역이다. 따라서 법원의 청소년 법교육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홍보 활동이 아니라, 법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사법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사법정책적 수단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법원의 법교육은 청소년을 미래의 권리 주체이자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적 수단이다. 법원 법교육 과정에서 법원은 판결기관을 넘어 민주적 법치주의의 살아 있는 교육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결국 법원의 법교육은 사법부에 대한 이해 증진이나 이미지 개선을 넘어서, 청소년이 절차적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법원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사법 신뢰와 사법 접근성의 향상을 통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그 궁극적 의의가 있다.